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64,809,183	106,944,275
일반회계	3,104,490,120	93,134,704
특별회계	460,319,063	13,809,572
공기업특별회계	375,767,686	11,273,0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155,356	5,554,6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0,612,330	5,718,370
기타특별회계	84,551,377	2,536,541
교통사업 특별회계	30,078,518	902,35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67,600	38,02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169,925	5,098
대지보상 특별회계	234,385	7,032
수질개선 특별회계	27,097,796	812,93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78,782	98,363
균형발전특별회계	21,180,206	635,4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43,900	37,317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265	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286,83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